

제 7 장 무역구제

제 1 절 긴급수입제한조치

제 7.1 조 1994 년도 GATT 제 19 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및 모든 후속 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이 협정은,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하는 당사국이 그러한 조치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에 대하여 양 당사국에 추가적인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시에 다음의 조치를 적용 또는 유지하지 아니한다.

가.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그리고

나.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에 따른 조치

제 7.2 조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1. 제2항을 조건으로, 이 협정에 규정된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한 쪽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수입이 단독으로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을 구성할 정도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 하에, 그 한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그 상품이 수입되는 당사국은 피해를 구제 또는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그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관세율의 추가 인하를 정지하는 것

나.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

- 1) 그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취하여지는 시점에서 유효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그리고
 - 2)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 일에 유효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 다. 계절적으로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의 경우, 각 계절별로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
- 1)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일 직전의 상응하는 계절에 대하여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그리고
 - 2)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의 상응하는 계절에 대하여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2. 다음 조건 및 제한은 제 1 항에 따라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절차에 적용된다.

- 가.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서 하는 상품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으로 귀결될 수 있는 절차의 개시에 대한 서면 통보 및 관련한 협의 요청을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전달한다.
- 나.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조사당국이 모든 그러한 조사를 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보장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은 이러한 모든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절차 개시일 후 1년 이내에 적용한다.
- 다.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유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권한 있는 당국이 그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그 산업이 구조조정 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제1항과 제2항 및 제7.3조에 규정된 절차에 합치되게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의 총 기간은 최초 적용기간과 이에 대한 연장을 포함하여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 라.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종료하는 때, 관세율은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단계적 관세 철폐에 관한 부속서 2-라(관세 철폐)의 그 당사국의 양허표에 따라 유효하였을 관세율이 된다.

3. 가. 한쪽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 후 30일 이내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거나 그 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의 형태로 된 적절한 무역자유화 보상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부여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당사국은(이하 “조치적용 당사국”이라 한다)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한 그러한 보상을 제공한다.
 - 나 양 당사국이 협의 개시 후 30일 이내에 보상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조치가 적용되는 원산지 상품의 당사국은 조치적용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는 양허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 다 가호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조치적용 당사국의 의무와 나호에 따라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권리는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종료하는 날에 소멸된다.
4. 제3항에 언급된 정지할 수 있는 권리는,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는 한, 그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유효한 최초 24개월 동안 실행되지 아니한다.

제 7.3 조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

1.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증가하였으며 그러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권한 있는 조사당국의 예비판정에 따라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당사국의 권한 있는 조사당국이 예비판정을 내리기 전에, 그 당사국은 수입자 및 수출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가 잠정적인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요청하는 신청서의 공개본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를 명시한 공고를 자국의 관보에 공표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증거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 당사국이 그 공고를 공표한 날 후 최소한 20일의 기간을 부여한다.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조사당국이 조사를 개시한 후 최소한 45일까지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모든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존속기간은 20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그 기간동안 조치적용 당사국은 제7.5조제4항의 요건을 준수한다.

4. 그 조치적용 당사국은 제7.5조제4항에 기술된 조사에서 제7.2조제1항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조사결과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모든 관세인상분을 신속하게 반환한다. 모든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존속기간은 제7.2조제2항다호에 기술된 기간의 일부로 계산된다.

제 7.4 조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상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그 상품의 과도기간 동안에만 적용될 수 있다.

제 7.5 조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운영

1. 각 당사국은 모든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규율하는 자국의 법, 규정, 결정 및 판정의 일관되고 공평하며 합리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법 또는 행정재판소의 재심을 조건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 절차에서의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판정을 권한 있는 조사당국에 위임한다. 피해부정판정은 그러한 재심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변경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그러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권한 있는 조사당국에게 그 당사국이 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3. 각 당사국은 제4항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공평하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효과적인 긴급수입제한조치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4.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제3조 및 제4.2조에 따라 그 당사국의 권한 있는 조사당국이 조사한 후에만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제3조 및 제4.2조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 7.6 조 긴급수입제한조치 사안에 대한 분쟁 해결

당사국은 제안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하여 제21.6조(패널의 설치)에 따른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지 아니한다.

제 2 절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제 7.7 조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다른 협정과의 관계

1. 가. 이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반덤핑 및 상계조치의 적용에 대하여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 협정 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하고, 이러한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관한 분쟁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해결된다.
- 나. 제2항 및 제4항을 제외하고, 이 협정은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치에 대하여 당사국에게 권리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당사국은 이 조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이 협정상의 분쟁 해결 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한다.¹

통보 및 협의

2.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신청을 접수한 때, 그리고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과 합치되게, 신청의 접수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 통보를 제공하고 신청에 관하여 회의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부여한다.

최소 부과

3. 가. 양 당사국은 총 덤핑마진 또는 보조금보다 적은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부과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인정한다.
- 나. 이와 관련하여,
 - 1) 한국은 자국의 관련 국내법과 규정을 적용한다. 그리고
 - 2) 캐나다는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부과가 공공 이익에 부합하지 아니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국 국내법에 따라 제공된 정

¹ 제2항 및 제4항에 관하여 분쟁해결의 이용은 가능하지 아니하나, 양 당사국은 이 항들이 구속력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킴을 확인한다.

보를 고려한다. 이러한 정보를 고려한 후, 권한 있는 당국은 부과될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액을 총 덤핑마진 또는 보조금으로 할지, 또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한 보다 적은 금액으로 할지를 캐나다 국내법에 따라 고려할 수 있다.

약속

4. 가.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를 개시한 후, 그 당사국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협정」 또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기술된 대로 자국의 당국이 약속을 고려하도록 요청하기 위한 자국의 법과 절차에 관한 서면정보를, 그러한 약속을 제의하고 체결할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대사관 또는 권한 있는 당국에게 전달한다.
- 나.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에 있어, 한쪽 당사국의 당국이 덤핑 또는 보조금 지급, 그리고 그 덤핑 또는 보조금지급으로 야기된 피해에 관한 긍정적인 예비판정을 내린 경우, 그 당사국은 수락된다면 자국의 국내법과 절차에 규정된 수단을 통하여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중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약속 제안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수출자에게 적절한 고려와 충분한 협의 기회를 부여한다.

제 3 절 무역구제위원회

제 7.8 조 무역구제위원회

1. 양 당사국은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 조치와 긴급수입제한조치 문제를 포함한 무역구제 사안을 담당하는 각 당사국의 관련 기관의 적절한 수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한다.

2. 모든 사안에 대하여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국내 무역구제 법, 정책 및 관행에 대한 각 당사국의 지식 및 이해를 증진하는 것
- 나. 제7.7조제2항 및 제7.7조제4항의 준수를 포함하여 이 장의 이행을 감독하는 것
- 다. 무역구제 사안을 담당하는 양 당사국의 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는 것
- 라. 양 당사국이 무역구제 사안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장을 제공하는 것
- 마. 양 당사국의 공무원을 위한 무역구제법의 운영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그 개발을 감독하는 것, 그리고
- 바. 다음을 포함하여 그 밖의 관련된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양 당사국이 논의하는 장을 제공하는 것
 - 1) 국제무역협상에 관련된 문제를 포함한 무역구제와 관련된 국제적인 문제, 그리고
 - 2) “이용가능한 사실”의 적용 및 실사 절차와 같이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조사에 있어서의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관행

3. 위원회는 최소 매년 1회 회합하며,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더 자주 회합할 수 있다.

제 4 절 정의

제 7.9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권한 있는 조사당국이란

- 가. 한국의 경우, 무역위원회, 그리고
 - 나.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
- 또는 그 각각의 승계 기관

국내 산업이란 당사국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생산자 전체, 또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총 생산량이 그 상품의 국내 총생산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란 제7.2조에 기술된 조치를 말한다.

심각한 피해란 국내산업의 증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말한다.

실질적 원인이란 중요하고 다른 어떠한 원인보다 덜 중요하지 아니한 원인을 말한다.

심각한 피해의 우려란 단순히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명백히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말한다. 그리고

과도기간이란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다음 중 가장 이른 날에 종료되는 기간을 말한다.

- 가. 그 상품의 관세 철폐 기간 종료 후 10년, 또는
- 나. 이 협정의 발효 후 15년